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나361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나361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33441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권한

담당변호사 엄현정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석기

변론 종결2024. 10. 15.

판결 선고2024. 11. 12.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533441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기재 스튜디오 영업에 관하여 2021. 2. 28. 체결된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을 113,210,986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3,210,986원 및 그 중 68,172,46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C와 피고 사이에 2019. 10. 25. 별지1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2023. 12.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면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2 기재 스튜디오 영업에 관하여 2021. 2. 28. 체결한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사해행위의 대상을 바꾸어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취소청구를 변경하였는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대상행위가 변경되었고 그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달라졌으므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H의 투자자이자 공동대표였으나, 2019. 5. 23. C와 위 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을 합의해지(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하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원고와 C는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투자 정산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투자계약 해지 계약

C(이하 '갑'이라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주식회사 H(이하 '회사'라 칭함)의 주식 60:40

지분(갑과 을의 가족 소유주식은 갑과 을의 소유주식으로 한다)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 정산방법 및 권리의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투자계약 해지]

갑과 을은 2010. 9. 1.자 체결한 회사에 대한 투자계약(지분비율 갑:을 = 60:40)을 2019. 2. 28.자 정산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에 해지한다.

2. [사업의 계속]

갑은 회사를 계속하여 경영하고, 을은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2019. 5. 23.자로 사임하고 이후 본인의 책임 하에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기로 한다.

4. [정산 방법]

가. 회사 자산

1) 자동차 및 사진영상 장비 등

- 갑과 을은 정산 기준일 회사 자산(CS업무프로그램, 사진영상장비, 컴퓨터 포함)을 2억원으로 평가하고 을이 기 반출한 장비의 가액을 8천만원으로 평가하여 2019. 2. 28.자 을이 받을 지분 40%(을 소유주식 4,000주, J 주식 4,000주)에 해당하는 정산금 지급에 갈음한다.

2) 사업장 임대보증금

- 갑은 사업장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서 20,000,000원(월 임대료 지급분 12,000,000원 및 명도시 원상회복비용 8,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000,000원 중 금 40,000,000원을(을의 지분 40%)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즉시 을에게 지급한다.

3) 을의 투자금 반환

- 갑은 을이 갑의 동의하에 회사에 지원한 운전자금 및 인테리어 자금(각 20,000,000원) 총 40,000,000원을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16개월) 매월 250만원씩을 매월 말일자로 분할 상환한다.

나. 회사 부채

2) 급여지급

- 회사는 을에 대한 미지급급여 금 32,172,460원을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C와 원고는 2019. 10. 26. 위 투자계약 해지 계약서 중 '제4조 가. 2) 사업장 임대보증금 정산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000,000원은 2019. 10. 26.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10,000,000원으로 감축하되, 2019. 12. 5.부터 매월 5일 1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합의하였다.

다. C는 2019. 8. 23.부터 2020. 2. 20.까지 8회에 걸쳐 총 14,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급여로서 원고 계좌로 이체하였고, 사업장 임대보증금 정산금에 대하여는 2019. 10. 26.자 합의에 따른 정산금 20,000,000원만 지급하였다.(갑 제12호증 A 계좌 입금내역 참조). C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잔여 투자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잔여 급여	18,172,460	총 32,172,460원에서 C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14,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사업장 임대보증금	10,000,000	2020. 10. 26.자 합의에 따른 잔금 10,000,000원
잔여 투자 정산금	40,000,000	
합계	68,172,460	

라. C가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위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잔여 투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C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C는 원고에게 68,17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20. 12. 2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439866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져 2021. 1. 13. 확정되었다.

마. 위 투자계약 해지 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9. 5. 23. 주식회사 H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K, 2층이었으나, 2020. 3. 30. 서울 중구 L 비1층 아케이드로 변경 등기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 간의 위 L 비1층 아케이드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21. 2. 28.자로 종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와 주식회사 I 간 위 L 비1층 아케이드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바.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영상 및 사진 촬영, 제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C의 아들이다. C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1. 2. 28.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L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M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자신의 아들인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로 변경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2,076,000원의 소유 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6. 7.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4257), 위 약식명령은 2022. 6. 23. 확정되었다. D의 홈페이지 사진에는 C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직원목록에는 C가 대표이사로 안내되어 있다.

사. N 주식회사는 2020. 12. 22. C에 대한 신용평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20. 12. 22.을 기준으로 ① C는 당시 주소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위 주소지의 임차보증금 정보가 미상이고, ② C 소유의 부동산 충남 태안군 O, P에 청구금액 합계 351,684,970원의 압류 및 가압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C에 대해 Q은행 17,819,000원, R카드 3,474,000원, 신용보증기금 313,284,000원 합계 334,577,000원 총 3건의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었고, ④ C는 신용등급 10등급(000~346, 불량 등급), 신용 평점 280점으로 신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신용 거래 시 다소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21. 7.경 주식회사 I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채1177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주식회사 H이 소재하던 서울 중구 L 비1층 아케이드에 관하여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1. 2. 28. 당일에 피고가 주식회사 I와 위 L 비1층 아케이드에 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 소재하던 장소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가 C로부터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사실상 묵시적으로 양도받았다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21. 7.경 피고와 C 간 위 묵시적 영업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주식회사 H의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영업을 2021. 2. 28. 무렵 사실상 이전하였는바, C의 위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C의 재산상태, 사업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C와 피고 간 위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은 사해행위로 C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잔여 투자 정산금 합계 68,172,46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1.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439866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12. 2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인 113,210,9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3,210,986원 및 그중 68,172,460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C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2021. 2. 28. 무렵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잔여 급여 및 잔여 투자 정산금의 원금이 68,172,460원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뜻하는바(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無)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핀 기초사실 및 갑 제2, 7, 13 내지 15, 22호증,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주식회사 H이 소재하던 서울 중구 L 비1층 아케이드에 관하여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21. 2. 28. 당일에 주식회사 I와 위 L 비1층 아케이드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주식회사 H의 과거 상호인 '주식회사 S'(2002. 2. 7. ~ 2005. 6. 30.)과 유사한 D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H이 사용하던 홈페이지 사진 및 관리 프로그램 및 전화번호, 제네시스 차량까지 그대로 사용하며 위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로 사진관 영업을 한 점, D의 직원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H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C 역시 여전히 D에서 주된 촬영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C 또는 주식회사 H 사이에 명시적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주식회사 I와 위 L 비1층 아케이드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21. 2. 28. 무렵에는 피고가 C로부터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사실상 묵시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앞서 살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0. 12. 22. 기준 C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C의 주소지 임대차보증금은 그 존재의 입증에 있어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20년 충남 태안군 T리 일대 담 및 임야 실거래금액이 75,000,000원 ~ 34,800,000원임을 고려할 때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O, P의 실거래금액 합계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 및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Q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351,684,970원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소극재산으로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 및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Q의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 351,684,970원과 Q은행, R카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합계 334,577,000원의 채무불이행정보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12. 22.자 N 주식회사 신용평가조사 결과상 C는 그 무렵부터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와 피고 간 위 묵시적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이 체결된 무렵인 2021. 2. 28.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C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양도하고 영업수익을 이전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3) 수익자의 악의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69. 1. 8. 선고 68다2022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아버지인 C의 건강이 악화되자 C가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장소에서 피고 명의의 D 운영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로서는 C와 원고 간 주식회사 H의 사업정산 비용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위 묵시적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 당시 피고가 C의 위 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가 2021. 2. 28. 위 영업을 양도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가 주식회사 H의 영업을 사실상 양수하여 D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채권·채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위 묵시적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의 대상인 위 영업은 그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C에 대한 잔여 급여 및 잔여 투자 정산금 원금이 68,172,460원임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고, 위 원금에 대해 C의 원고에 대한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20. 2. 21.부터 이 사건 소 변론종결일인 2024. 10.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채권액은 아래와 같다.

68,172,460					
68,172,460	2020. 2. 21.	2020. 12. 29.	24	313/366	13,992,118
68,172,460	2020. 12. 30.	2024. 10. 15.	12	(3 + 291/366)	31,046,408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3,210,986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와 C는 주식회사 H 투자계약의 해지를 합의하며 정산 기준일인 2019. 2. 28. 회사의 자산(CS업무프로그램, 사진영상장비, 컴퓨터 포함)을 2억원으로 평가한 점, 주식회사 H의 발행주식총수는 20,000주이고 위 계약해지 합의 당시 원고는 회사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와 피고 간 주식회사 H 영업의 묵시적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의 가액은 원고의 위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위 채권액이 가액배상금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C와 피고 간 주식회사 H의 영업에 대한 2021. 2. 28.자 묵시적 영업양도 및 영업수익 이전 계약은 113,210,9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13,210,986원 및 그 중 68,172,46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최복규

판사오연정

별지

1) 원 미만 버림